

서산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연구

이 상 준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sky99@cni.re.kr

유 예 나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원
yooyena@cni.re.kr

이 제 이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원
jly1008@cni.re.kr

이 연구는 서산시의 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서산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추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균형발전사업 개요
2. 균형발전사업 추진사례
3.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4. 부록 - 균형발전 조례 현황

요약

- 이 연구는 서산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결과, 균형발전사업이 갖는 의미와 추진방향에 대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추진 사례조사를 통해 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 측면에서, 서산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필요함
 - 균형발전사업 취지는 좋지만,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전반으로의 사업 성과 확산의 한계와 사업의 지속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 서산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함
- 더불어,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은 단계적 추진절차의 이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사업 발굴의 지원이 필요함
 - 균형발전위원회, 서산시, 시의회, 외부 전문가, 주민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산시 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01

균형발전사업 개요

1. 국가균형발전사업 개요

-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수도권 및 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인구 및 자본의 집중 현상이 심화됨
-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성 및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방의 쇠퇴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참여정부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가주도 균형발전사업” 추진

- 전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 계획 변화 내용

구분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근거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목적	· 지역균형발전	· 지역 경쟁력 강화	· 지역 경쟁력 강화 ·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조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추진체계	· 국가균형발전계획 · 부문별 발전계획 · 지역혁신발전계획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 부문별 발전계획 · (초)광역권 발전계획 · 시·도, 기초생활권발전계획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 부문별 발전계획 · 시·도발전계획 · 지역생활권발전계획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혁신도시 발전계획 · 부문별 및 시·도 시행계획
역점정책	· 지역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지역전략산업 육성 · 지역선도산업 선정 및 육성	· 지역특화산업으로 대체 · 지역협력산업으로 대체	· 자치분권, 낙후지역 배려 · 공간규모별 다차원적 정책 목표 및 지역내 균형발전
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제주도특별자치도계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도특별자치도계정	·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도특별자치도계정	· 지역발전특별회계 · 계획계약제도(포괄지원협약) ·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출처 : 대구경북연구원. 201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변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자료, 재구성

● 최근 인구감소 및 저성장 기조에 대응한 “분권형 균형발전사업” 추진 도모

- 통계청 자료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생산연령인구도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전체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인구와 자본의 집중이 발생하는 도시와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과 농촌에서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문재인정부에서도 지방 분권과 작은SOC를 중심으로, 낙후지역을 배려한 지역 주도의,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해결 패러다임 전환 등 지역간 및 지역내 균형발전 도모

2. 기초 균형발전사업 추진 필요성

● 균형발전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기초균형발전사업 추진 필요

-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사업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낙후된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발굴·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낙후된 기초자치단체의 물리적 성장과 발전,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
- 그러나,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고, 그 성과가 광역자치단체 전반 혹은 기초자치단체 내로 파급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도 분명한 실정임
- 균형발전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균형발전사업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생적 균형발전사업 추진도 필요한 실정임

● 기초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맞춤형 추진방안 마련 필요

- 기초자치단체는 읍면동으로 구성되며, 이들 간에도 불균형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중심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 중심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 확보,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방안 등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예, 통계자료 등) 확보, 예산 확보 등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추진방안 모색이 필요함

1)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 2018

02

균형발전사업 추진사례

-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에서 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김포시, 여주시, 파주시(경기도), 완주군(전북), 천안시, 당진시(충남), 청주시(충북) 등에서 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표 2] 균형발전사업 관련 조례 제정운영 현황

	구분	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광역 자치 단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6899호	2018.7.1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3469호	2007.2.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5788호	2018.7.1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311호	2012.10.1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5722호	2016.11.1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1153호	2018.8.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928호	2012.7.18
	경기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5906호	2018.5.2.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4273호	2017.1.26
	전라남도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4411호	2017.9.28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4225호	2017.2.28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조례	제3727호	2015.1.1.
	기초 자치 단체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1373호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595호	2017.9.27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1077호	2013.2.22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조례	제2496호	2016.7.28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45호	2018.7.23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499호	2015.12.15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제505호	2016.5.4

출처 : 법제처, 2018, 균형발전 지원 조례, <http://www.law.go.kr>

1. 광역 균형발전사업 추진사례

-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균형발전사업은 추진 대상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원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
 - 다만, 서울특별시 등 광역도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시도 포함)에서의 추진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등 광역도시(특별자치시도, 광역시도 포함)의 균형발전사업은 도시의 낙후수준을 기준으로 한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상지역 선정은 광역도시의 도시화 수준을 고려하여, 기성시가지의 낙후수준이나 미래적 가치, 개발밀도, 인구감소, 소득수준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음
 - 지원예산은 대부분 특별회계 및 관련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음
 - 사업 지원을 위해 수립하는 균형발전기본계획 상에 주거환경, 재정, 문화복지·교육,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시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 배치, 광역단위 사업의 추진, 용적률 완화 등의 다양한 지원 시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도 별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균형발전 전담 조직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시도 포함)의 균형발전사업은 행정구역 내 지자체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낙후 지자체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대상지역 선정은 인구감소, 고령화, 취업기반, 소득수준,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산업활동기반, 지방재정기반, 접경지역 등이 포함되고 있음
 - 지원예산은 대부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 지원을 위해 수립하는 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평가 등

을 통해 지원대상과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균형발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검토 기준을 통해 지원대상 시군별 종합분석과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도모하고 있음

- 별도 검토기준은 인구(연평균 인구증가율, 고령인구율, 조출생률), 산업(사업체수,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고용기회), 재정(1인당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교육(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의료(의료인수, 병상수), 복지(아동복지기반, 노인복지기반), 문화체육(문화시설, 마을체육시설)임

2. 기초 균형발전사업 추진사례

-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균형발전사업은 지자체 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지원 대상의 선정이나 재원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균형발전 관련 조례 등이 제정된 지역도 있음

- 법제처(2018)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여주시, 파주시(경기도), 완주군(전북), 천안시, 당진시(충남), 청주시(충북) 등에서 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균형발전 조례를 통해,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선정기준과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특별회계 설치,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선정기준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인구감소, 고령화, 취업기반, 사회기반시설 등이 포함되며, 별도로 위원회 심의, 시청과의 거리, 기 낙후지역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지역도 있음

-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 여건의 한계로 설치가 미흡한 실정임

- 균형발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균형발전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현실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초 균형발전사업은 기초자치단체 내 상대적 낙후지역 등 지원대상 지역 선정, 선정 지역 이외 지역과의 형평성, 특별 예산 등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천안시는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균형발전사업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선정기준과 관련한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광역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시된 선정기준을 대부분 기초 균형발전사업에서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 선정기준의 활용이나 분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광역 균형발전사업은 기초자치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함에 따라, 선정기준에 따른 통계자료의 구축 및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실정임
 -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읍면동 단위를 지원대상으로 함에 따라, 일부 선정기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정기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 및 활용성에 큰 제약이 있는 편임
 - 이로 인해, 일부 기초자치단(여주시, 파주시)에서는 선정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 시청과의 거리를 선정기준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음

[표 3] 균형발전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분	인구 감소율	고령 화율	산업 활동 기반	주민 취업 기반	소득 수준	지방 재정 기반	복지 서비스	사회 기반 시설	개발 밀도	기성 시가지	시설 노후도	역사 문화적 가치	접경 지역	위원회 심의	시청 거리
광주광역시	○				○	○			○						
부산광역시	○				○	○			○						
울산광역시										○	○	○			
인천광역시										○		○			
세종특별 자치시	○	○		○				○							
제주특별 자치도	○	○	○	○				○							
경기도	○	○		○		○		○					○		
경상남도	○	○		○		○		○							
충청남도	○	○		○		○		○							
경기도김포시	○	○		○	○	○		○							
경기도여주시														○	○
경기도파주시														○	
전라북도 완주군	○	○		○			○	○							
충청남도 당진시	○	○		○		○		○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18

3. 시사점

-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서 지원조례 제정이 선행되고 있음
 - 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음
 - 균형발전사업 지원조례 상에 지원대상지역선정,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특별회계 확보 등을 포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 기초자치단체는 지원조례는 제정운영 중에 있으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초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기초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재정적 한계, 역차별 문제, 명확한 지원체계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한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무엇보다 균형발전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 발생을 최소화시킬 방안 모색 필요

● 균형발전사업 관계자 인터뷰

- 첫째, 기초 균형발전사업은 자칫 읍면동에 대한 “역불균형” 및 “형평성”, “소외감”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주체 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로 인해, 특별회계 등의 마련 및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셋째, 읍면동의 통계자료 구축의 한계로 인해, 지원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다양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넷째, 균형발전사업 추진 자체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실제 추진 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다섯째, 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제도 등 유사 정책 및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여섯째, 지원사업 내역이 관련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기존 읍면동에서 제시하거나 요구되는 사업과 차이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03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첫째,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한 역차별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둘째,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셋째, 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1.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서산시 내 각계각층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사례조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균형발전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전 지역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 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
 - 반면, 지원대상의 선정의 투명성 확보, 지원대상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및 역불균형, 소외감 문제, 지원예산 확보로 인한 재정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서산시 내 각계각층의 의견조율과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
 -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서산시 내 읍면동 중 일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읍면동) 도출결과와 예산

지원에 대한 다른 지역(읍면동)의 역불균형, 형평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함

- 이를 위해, 균형발전사업의 취지, 추진 필요성,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
- 무엇보다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할 행정기관과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간의 합의가 필요함
- 두 기관 및 주민 간 토론회,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사업은 분명 지원대상 선정 및 관련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근거로서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칭)”의 제정·운영이 필요함
-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과 천안시, 당진시만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음
- 조례는 크게,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개념과 정의, 지원대상지역 선정, 균형발전계획 수립,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특별회계(혹은 독립재원 확보 등), 사업방식 등을 포함하여 제정 필요

2. 균형발전사업 관련예산 확보

●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충청남도에서는 2기 평균 4,278.2억원, 지자체별 평균 534.8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7,223억원을 지원하고 있음²⁾
-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한 규모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서산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관련예산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지역별 약 20~50억 정도의 사업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사업 관련 추진 사업 사례를 검토하면, 대부분 거점단위 시설과 공간을 조성하고 있음
- 이들 사업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지역별 최소 20~50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2) 충남연구원,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안 검토 연구, 현안과제, 2017, p.4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통해 1개 면지역(소재지 중심) 4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및 부대사업 등의 제외 시 25억~3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예산 확보는 사업지원방식과도 연동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지원방식이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유사한 형태(관련시책 우선 반영, 공공기관 및 시설 분산배치 등)로 추진될 경우, 독립재원의 마련은 불필요하며, 기존 서산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면 가능할 것임
- 둘째, 사업지원방식이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형태(특별회계 설치)로 추진될 경우, 먼저 관련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조례 상 내용을 근거로 “보통세 징수액, 일반회계 등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지방채” 등 특별회계 설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제시가 필요함
- 셋째, 사업지원방식과 무관하게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독립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현재 혹은 사업 기간 내 서산에서 마련 가능한 예산 항목(예, 균특보조금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

● **서산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 설치 혹은 독립재원 확보 등을 통해 약 100억 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예산 규모는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의 성격이나 추진방향,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약 100억 정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예산의 근거는 향후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한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 설치 혹은 독립재원 확보 방식으로의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3. 균형발전사업 추진방향 결정

1)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기본방향 설정

●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의 개념과 목표를 정립함**

-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은 “충청남도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함

- 서산시는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에 근거하여, “서산시 내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서산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과 같이, 서산시의 균형발전의 특성과 지역의 자율적 성장과 융성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함

- 공간(지역), 물자(자원), 사람(시민) 간 유기적인 연계와 이를 통한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함

2)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

- 기존 균형발전 관련 선정기준의 활용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정기준은 다양하지만,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지방재정기반, 주민취업기반, 사회기반시설 등 대표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지표 중 인구증가율이나 고령화율, 사회기반시설은 읍면동별 자료 확보 및 조사분석이 용이한 항목이지만 지방재정기반이나 주민취업기반 등은 자료 확보 자체가 어려운 항목임

[표 4]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 관련 사례조사 종합

구분	세부 측정 자료	자료 확보 용이성
인구증가율	▪ 최근 10년 간 인구증가율, 인구수	●
	▪ 조출생률	△
고령화율	▪ 전년도 말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14세 이하 인구수)	●
주민취업기반 (산업활동기반)	▪ 총사업체수와 사업체 종사자지수 ▪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
소득수준	▪ 최근 5년 간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의 평균	△
지방재정기반	▪ 최근 5년 간 재정력지수	△
보건 및 복지서비스	▪ 천명당 병원수(혹은 의사수, 병상수)	●
	▪ 영유아(6세 이하) 천명당 보육시설 수	○
사회기반시설	▪ 최근 상수도 보급률, 주택보급률	●
	▪ 최근 도로율, 최근 하수도 보급률	△
기성시가지	▪ 기성시가지 개발 및 낙후 수준	△
개발밀도	▪ 미개발지, 거개발지 등 개발밀도 수준	○
생활여건 및 환경수준	▪ 노후주택비율(1980년 이전 주택수 비율), 1인당 공원면적	○
역사문화적가치	▪ 역사적문화적 자원의 보존복원을 통한 개발 파급효과 검토	△
접경지역	▪ 북한과 연접한 지역 포함 여부	△
위원회 심의	▪ 균형발전위원회 검토 및 협의	△
시청 거리	▪ 행정소재지와의 거리(직선거리, 시간거리)	●
교육 및 문화시설	▪ 면적 당 학교수, 천명당 문화시설	○
	▪ 천명당 마을체육시설수	○

주 : 지역별 균형발전사업, 조례 및 가이드라인 상 제한 내용 기준, 재정리

참고: ● 높음, ○ 보통, △ 낮음

- 읍면동에서 자료 확보 및 조사분석이 용이한 선정기준으로 재구조화 필요
 - 현재 자료 확보 및 조사분석이 용이한 인구증가율이나 고령화율, 주민취업기반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균형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포함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정량기준이 어렵다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지역 선정은,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선정지역 후보군을 도출하고, 이를 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절차를 통해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지원대상지역 선정 규모 결정

- 지원대상지역의 규모는 관련예산의 규모와 연동하여 결정함

- 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성과 확산,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한 선정 규모 결정 필요
 - 서산시는 5개 동지역을 제외하고 10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10개 지역 모두에 대한 지원(예산이 100억 규모 시 1개 지역 당 10억)이 이루어지는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이나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규모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지원대상지역 선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균형발전사업의 성과 확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10개 읍면(균형발전사업 특성 상 동지역은 제외) 중 약 2~4개 지역을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 검토(※ 이를 통해 서산시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의 인식 제고 및 성과의 분산과 확산이라는 긍정적 효과 기대)
 - 둘째, 균형발전사업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지역은 1개(최대 2개) 지역을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타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고려할 때, 100억은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규모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지역 선정 검토 필요
 -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성과 확산도 중요

하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인식 제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도 중요함

- 사업을 통한 성과 확산은 선도적 사업 추진 후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선도적 사업 추진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고려하여 두 번째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1개(최대 2개) 지역)으로의 추진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지원사업 분야

● 주민과 공동체 활동 및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 추진 방안 제시

- 충청도에서는 지역발전지수 세부지표상 전국 하위 30%에 속하는 지표개선을 위해 ① 인구증가 및 경제활성화, 소득증대 사업, ②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서비스 제고, ③ 충청남도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발전사업으로서 지역내 주민(단체)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내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사업을 지원사업 분야로 제시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면지역이 갖고 있는 기반시설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전자는 기존 추진된 사업 및 지자체 역량을 활용하여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이 아닌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후자는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 반면, 두 방식 모두 주민과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역량제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강화된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지원대상 지역의 자율적 판단에 근거한 사업 선정

-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의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하기 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와 같이, 지원가능한 사업 분야를 제시하고, 주민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역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추진해야 할 분야가 상이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임
- 다만,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서산시 주도의 전문가 지원이나 다양한 역량강화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전문가 활용 및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원대상 지역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을 추진하여, 지역에서 보완해야만 할 분야가 무엇인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을 제시함

-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지만, 재산권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약 규정을 제시함
- 예를 들면,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의 규모와 비율, 지원예산의 지역별 공동 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제약을 둘 필요가 있음

[표 5] 농림축산식품부 추진가능한 사업내용

구분	세부사업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충	문화	다목적마당(예시 :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시설, 쉼터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복지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등), 다목적회관(농어업인회관 등), 서비스전달시설
	주거수질환경 개선	(이동식 세탁소, 도서관, 커뮤니티 버스 등),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빈집정비, 신규마을기반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공동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 및 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등
	상하수도 생산기반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개선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쉼터(둑방정비 등), 마을 도량·샘터·옛길 복원 및 정비,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2018, 지역역량강화는 본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외함

5) 서산시 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선정, 선정지역의 불균형 및 낙후도 분석,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기본방향(비전, 목표, 전략), 세부 추진과제 도출과 같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와, 주민 제안사업 발굴 및 계획화, 선정과제 시행계획화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함
- 기본계획 단계를 통해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을 제시함

- 시행계획 수립 단계를 통해, 제안사업의 발굴 및 구체화, 사업 실현 등을 추진함
- 서산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10~12개월의 과정을 통해 수립함

● 대상지역별 추진방향 설정

- 대상지역 선정기준 등을 활용하여,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
-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별로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토대로, 지역의 불균형 수준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지역별 추진방향과 과제를 설정함
- 대상지역별 장단점 분석결과, 추진방향 및 과제를 종합하여,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기본방향과 과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함

● 전문가와 연계한 대상지역별 제안사업 계획 발굴 및 작성

- 지원대상 지역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활동(예, 도시재생대학, 마을대학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계획화함
- 주민 스스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서산시 주도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연계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외부 전문가 등의 활용을 통해, 지역이나 주민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계획화하여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균형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 대상지역별로 제안된 사업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과 개선방안을 도출함
- 이들을 반영한 제안사업의 수정·보완 후 균형발전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선정된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
- 기본 및 시행계획은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관련부서, 지역주민 간 3~6개월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예산 활용을 전제한 시행계획 내용을 수록하도록 함
- 수립된 기본 및 시행계획 내용은 다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컨설팅과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실제 추진이 되도록 계획함

6) 지원사업 선정 및 계획화, 평가

●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균형발전위원회(총원 약 10~15명 이내)의 구성·운영이 필요함
- 균형발전위원회는 서산시 균형발전계획의 수립·평가, 관련 주요시책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 지역 및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함

-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균형발전위원회를 활용한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평가기준은 사례조사 등에서 제시된 기준 중 ①사업 적정성, ②피급효과, ③실현가능성, ④주민 추진의지, ⑤효율성(운영관리 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개발 시급성이나 재원확보 및 조달 타당성, 형평성은 읍면동 단위에서 검토하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평가를 통해 계획화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재작성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 더불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 매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추진함

- 사업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함
-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이들의 실제 추진현황이나 집행 수준, 개선 사항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평가함
- 평가결과를 토대로, 서산시 균형발전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도모하며, 필요 시 사업의 재검토 및 추진방향 수정 등을 추진함
- 매년 실시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번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하거나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함

[표 6]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추진 절차

사회적 합의	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사업 관련 설명회, 토론회 등(서산시) ○ 주민, 의회, 서산시 및 관련실과 의견 수렴
조례 제정	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시 및 의회 간 협의
예산 확보	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시 및 의회 간 협의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선정, 불균형수준,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기본방향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컨설팅	서산시 서산시 균형발전위원회, 외부 전문가(*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적정성, 지속성 등 컨설팅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서산시 서산시 균형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승인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제안사업 발굴 및 신청	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주민, 전문가 협의 ○ 제안서 제출(대상지역→서산시)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제안사업 평가	서산시 서산시 균형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업 검토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서산시 [관련기관부서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제안사업 구체화, 연차별 추진계획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컨설팅	서산시 서산시 균형발전위원회, 외부 전문가(*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제안사업 구체화, 연차별 추진계획 컨설팅
서산시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서산시 서산시 균형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승인 ○ 예산 반영(서산시)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서산시 균형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 사후관리, 이행 점검

04 부록 - 균형발전 조례 현황

[표 7] 균형발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지원대상지역선정	균형발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전담조직 등	사업방식	사업 우선순위
서울특별시	지역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5년 단위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부시장 등 25명 이내	지역균형발전 전담 조직 구성운영 가능	관련 시책 사업 반영	
광주광역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5년 단위 광주광역시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행정부시장 등 20인 이내		시책사업 우선 반영 공공기관 및 시설 분산 배치	
부산광역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5년 단위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위원장 등 20명 이내		시책사업 우선 반영 공공기관 및 시설 분산 배치	개발 시급성 파급효과 실현성 적정성 재원확보 및 조달 타당성 추진의지 형평성
울산광역시		5년 단위 울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행정부시장 등 20명 이내	구·군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	관련 시책 사업 반영	개발 시급성 파급효과 실현성 적정성 재원확보 및 조달 타당성 추진의지 형평성
인천광역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			관련 시책 사업 반영	개발 시급성 파급효과 실현성 적정성 재원확보 및 조달 타당성 추진의지 형평성
세종특별자치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관련 시책 사업 반영	시급성 파급효과 추진의지

구분	지원대상지역선정	균형발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전담조직 등	사업방식	사업 우선순위
						형평성
제주 특별자치도		5년 단위 지역균형발전기본 계획	지역균형발전 전담팀	행정부시장 등 19명 이내	관련 시책 사업 반영	
경기도	5년 단위 선정	5년 단위 지역균형발전기본 계획	행정부지사 등 40명 내외		사군별 시행계획 수립 후 추진	선정기준별 산출 수치 표준화점수 종합
경상남도	5년 단위 선정	5년 단위 지역균형발전개발 계획	도지사 등 20명 이내		사군별 시행계획 수립 후 추진	선정기준별 산출 수치 표준화점수 종합
전라남도			위원장 등 10명 이내			
충청남도	5년 단위 선정	5년 단위 균형발전기본 및 개발계획	행정부지사 등 25인 이내		연도별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선정기준별 산출 수치 표준화점수 종합
충청북도		5년 단위 균형발전기본계획	위원장 등 11명 이내	권역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		
경기도 김포시	5년 단위 선정	5년 단위 균형발전 기본계획	부시장 등 25인 이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추진	
경기도 여주시	5년 단위 선정	5년 단위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위원장 등 15명 이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추진	
경기도 파주시		5년 단위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부시장 등 16명 이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추진	
전라북도 완주군	5년 단위 선정	5년 단위 지역발전기본계획	부군수 등 20명 이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추진	
충청남도 천안시		5년 단위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계획	부시장 등 20인 이내			
충청남도 당진시	5년 단위 선정	5년 단위 균형발전 기본계획	부시장 등 25인 이내	지역균형발전 연구전담팀 구성운영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후 추진	
충청북도 청주시		5년 단위 균형발전 기본계획	부시장 등 15인 이내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18

[표 8] 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보 방안

구분	특별회계
부산광역시	1.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2.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 3.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 그 밖에 차입금, 보조금 등
울산광역시	1.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2.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4. 그 밖에 차입금, 보조금 등
인천광역시	1.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2.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3.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 4.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6.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
제주특별자치도	1.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2. 「지방교부세법」제6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퍼센트 이내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제26조의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5. 제주특별자치도고교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6.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경기도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의 보조금 <개정 2015.3.31.>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경상남도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충청남도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3.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충청북도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개정 2011. 4. 1>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0. 1. 1, 2011. 4. 1> 4. 차입금 <개정 2010. 1. 1, 2011. 4. 1>
서울특별시 양천구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역 내 공유재산(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한한다)의 매각수입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4. 그 밖의 수입
경기도 김포시	1. 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라북도 완주군	1. 완주군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2. 일반회계 등 터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3. 차입금
충청남도 당진시	1. 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충청북도 청주시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추가 재정지원금 2. 청주시 보통세 징수액의 0.33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18

이상. 끝.

참고자료

- 고용정보원, 2016,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
- 노무현사료관. 201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성과,
<http://archives.knowhow.or.kr>
- 농림축산식품부, 2018,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 대구경북연구원. 201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변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자료
- 법제처. 2018, 균형발전 지원 조례, <http://www.law.go.kr>
- 지역발전위원회, 201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충남연구원. 2017,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지역간 불균형 측정지표 개발 관련 당진시의회 보고자료
- 충남연구원. 2018, 제3기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시·군 선정(안) 및 가이드라인 작성
- 충청남도. 201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 통계청, 2018, 2017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KMI 동향분석,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VOL.63.
- 한상욱. 201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